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5호 2019. 5. 1.(수)

공 고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28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9-602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에 따라 정부정책 및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 직급별 불균형 해소, 정·현원 불부합 조정, 불합리한 복수직렬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 행	<u>1,203</u>	<u>544</u>	23	<u>75</u>	<u>318</u>	<u>243</u>
개 정	<u>1,259</u>	<u>550</u>	23	<u>98</u>	<u>321</u>	<u>267</u>
증 감	<u>⊕56</u>	<u>⊕6</u>	-	<u>⊕23</u>	<u>⊕3</u>	<u>⊕24</u>

나.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현 행	<u>1,203</u>	1	<u>1,182</u>	17	3
개 정	<u>1,259</u>	1	<u>1,238</u>	17	3
증 감	<u>⊕56</u>	-	<u>⊕56</u>	-	-

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일 반 직》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u>1,182</u>	10	68	247	<u>326</u>	<u>310</u>	<u>221</u>
개 정	<u>1,238</u>	10	68	247	<u>331</u>	<u>338</u>	<u>244</u>
증 감	<u>⊕56</u>	-	-	-	<u>⊕5</u>	<u>⊕28</u>	<u>⊕23</u>

※ 정무직(1), 연구직(17), 지도직(3)은 변동없음

라.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합 계		<u>⊕56</u>	<u>⊕6</u>	-	<u>⊕23</u>	<u>⊕3</u>	<u>⊕24</u>
7급	소 계	<u>⊕5</u>	<u>⊕3</u>	-	-	<u>⊕2</u>	-
	방 호	<u>⊕1</u>	-	-	-	<u>⊕1</u>	-
	위 생	<u>⊕1</u>	<u>⊕1</u>	-	-	-	-
	운 전	<u>⊕3</u>	<u>⊕3</u>	-	-	-	-
	필기운영	-	<u>△1</u>	-	-	<u>⊕1</u>	-
8급	소 계	<u>⊕28</u>	<u>△2</u>	-	<u>⊕21</u>	<u>⊕4</u>	<u>⊕5</u>
	행 정	-	<u>△2</u>	-	-	<u>⊕2</u>	-
	사 회 복 지	<u>⊕5</u>	-	-	-	-	<u>⊕5</u>
	식 품 위 생	<u>⊕1</u>	-	-	<u>⊕1</u>	-	-
	간 호	<u>⊕20</u>	-	-	<u>⊕20</u>	-	-
	운 전	<u>⊕2</u>	-	-	-	<u>⊕2</u>	-
9급	소 계	<u>⊕23</u>	<u>⊕4</u>	-	<u>⊕2</u>	<u>△2</u>	<u>⊕19</u>
	행 정	<u>⊕3</u>	<u>⊕2</u>	-	-	-	<u>⊕1</u>
	사 회 복 지	<u>⊕19</u>	<u>⊕1</u>	-	-	-	<u>⊕18</u>
	세 무	<u>⊕1</u>	<u>⊕1</u>	-	-	-	-
	전 산	<u>⊕1</u>	<u>⊕1</u>	-	-	-	-
	방 호	<u>△1</u>	-	-	-	<u>△1</u>	-
	보 건	<u>⊕3</u>	-	-	<u>⊕3</u>	-	-
	식 품 위 생	<u>△1</u>	-	-	<u>△1</u>	-	-
	환 경	<u>⊕1</u>	-	-	-	<u>⊕1</u>	-
	시 설	<u>⊕4</u>	<u>⊕4</u>	-	-	-	-
	위 생	<u>△1</u>	<u>△1</u>	-	-	-	-
	운 전	<u>△5</u>	<u>△3</u>	-	-	<u>△2</u>	-
	필기운영	<u>△1</u>	<u>△1</u>	-	-	-	-
연구직	소 계	-	<u>⊕1</u>	-	-	<u>△1</u>	-
	학예연구사	-	<u>⊕1</u>	-	-	<u>△1</u>	-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19. 5. 1. ~ 5. 8.(7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내부 인력 조정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

- 여성가족과-17923(2019.4.30.) : 2019A전남목포022

8. 예산 수반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계	56	56		2,332,140,150	
7급	5	5	48,770,030	243,850,150	5호봉
8급	28	28	42,882,890	1,200,720,920	3호봉
9급	23	23	38,589,960	887,569,080	1호봉

9.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소요 추계서 (1)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9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23	23	23	38,589,960	887,569,080	1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9급 1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8,589,960		
○ 인건비	27,586,090		
- 기본급	19,108,800	1,592,400원*12월	
- 수당	8,477,290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명절휴가비	1,910,880	1,592,400원*60%*2회	
•연가보상비	912,976	1,592,4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4,093,440	8,528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9,263,870		
- 성과상여금	2,376,440	2,160,4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5,825,33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989,11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72,99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2)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8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28	28	28	42,882,890	1,200,720,92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8급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2,882,890		
○ 인건비	30,694,380		
- 기본급	21,438,000	1,786,500원*12월	
- 수당	9,256,380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명절휴가비	2,143,800	1,786,500원*60%*2회	
•연가보상비	1,024,260	1,786,5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4,528,320	9,434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10,448,510		
- 성과상여금	2,794,880	2,540,8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6,473,37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1,099,15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81,11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3)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7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5	5	5	48,770,030	243,850,150	5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7급 5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8,770,030		
○ 인건비	36,646,750		
- 기본급	26,174,400	2,181,200원*12월	
- 수당	10,472,310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명절휴가비	2,617,440	2,181,200원*60%*2회	
•연가보상비	1,250,550	2,181,2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5,044,320	10,509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860,000	155,000원*12월	
○ 이전경비	12,123,280		
- 성과상여금	3,364,460	3,058,6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7,352,05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1,306,38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100,39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59	550	23	98	321	26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38	544	23	98	306	267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5	3	3	14	23
	6급	247	121	4	13	62	47
	7급	331	172	7	14	87	51
	8급	338	118	8	54	80	78
	9급	244	103	0	13	60	68
연구직	계	17	3			14	
	연구관						
	연구사	17	3			14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사	3	2			1	

< 개 정 >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59	550	23	98	321	267(12)
정무직		합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238	544	23	98	306	267(12)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9	4	1	1	3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5	3	3	14	23
		행 정	19	7	1		0	1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시설	16	8	1		4	3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0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인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6급	소계	247	121	4	13	62	47
		행 정	59	30	3		4	22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전산	7	6	1			
		행정+농업	1	0			1	
		행정+환경	5	0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시설	46	25			21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0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운 전	3	2			1	

직종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인화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소계	331	172	7	14	87	51
			행 정	111	55	6		20	30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5			1	
			방 호	1				1	
			공 업	32	12			20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환 경	4	0			4	
			시 설	25	17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0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0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15	6	1		8	
			위 생	2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6	5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8급	소계	338	118	8	54	80	78
		행 정	93	43	1		18	31
		세 무	10	9			1	
		사회복지	45	11				34
		숙 기	3		3			
		전 산	2	1	1			
		공 업	14	2		1	11	
		농 업	2	2				
		녹 지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간 호	33	1		32		0
		환 경	1	0			1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0			4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운 전	14	6	1		7	
		위 생	1				1	
		건축운영	1	1			0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1			5	
		기계운영	7				7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9급	소계	244	103	0	13	60	68(12)
		행 정	61	32			7	22(12)
		세 무	5	5				
		전 산	2	2				
		사회복지	63	22		3		38
		공 업	16	3			13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보 건	6			6		
		식품위생	0			0		
		환 경	3	0			3	
		시 설	18	14			4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방 호	2				2	
		운 전	20	6		3	11	
		위 생	0	0			0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0	1			9	
		열관리운영	0				0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0	6			1	3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3			14	
		학예연구사	11	2			9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03	544	23	75	318	243	총 계		1,259	550	23	98	321	26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82	539	23	75	302	243	일반직	계	1,238	544	23	98	306	267
	3급	1	1						3급	1	1				
	4급	9	4	1	1	3			4급	9	4	1	1	3	
	5급	68	25	3	3	14	23		5급	68	25	3	3	14	23
	6급	247	121	4	13	62	47		6급	247	121	4	13	62	47
	7급	326	169	7	14	85	51		7급	331	172	7	14	87	51
	8급	310	120	8	33	76	73		8급	338	118	8	54	80	78
	9급	221	99	0	11	62	49		9급	244	103	0	13	60	68
연구직	계	17	2			15		연구직	계	17	3			14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17	2			15			연구사	17	3			14	
지도직	계	3	2			1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2			1			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행							개정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03	544	23	75	318	243 (12)	총계	1,259	550	23	98	321	267 (12)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82	539	23	75	302	243 (12)	일반직 계	1,238	544	23	98	306	267 (12)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행 정	1	1				
4급 소계	9	4	1	1	3		4급 소계	9	4	1	1	3	
행 정	3	2			1		행 정	3	2			1	
기 술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5	2	1		2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5	3	3	14	23	5급 소계	68	25	3	3	14	23
행 정	19	7	1		0	11	행 정	19	7	1		0	11
시 설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시설	16	8	1		4	3	행정+시설	16	8	1		4	3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보건	2	2					행정+사회복지+ 보건	2	2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0			1	1	행정+환경+시설	2	0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247	121	4	13	62	47	6급 소계	247	121	4	13	62	47
행 정	59	30	3		4	22	행 정	59	30	3		4	22
세 무	6	6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방 호	1				1	
공 업	2				2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보 건	1			1		
시 설	3	1			2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전산	7	6	1				행정+전산	7	6	1			
행정+농업	1	0			1		행정+농업	1	0			1	
행정+환경	5	0			5		행정+환경	5	0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공업	8	5			3	
행정+시설	46	25			21		행정+시설	46	25			21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 사	1				1		공업+환경연구 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5			2		3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 통신	2	2					행정+전산+방송 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0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0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운 전	3	2			1		운 전	3	2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7급 소계	326	169	7	14	85	51	7급 소계	331	172	7	14	87	51
행 정	111	55	6		20	30	행 정	111	55	6		20	30
세 무	23	22			1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2	14				18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5			1		전 산	6	5			1	
공 업	32	12			20		방 호	1				1	
농 업	1	1					공 업	32	12			20	
녹 지	3				3		농 업	1	1				
수 의	0	0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수 의	0	0				
보 건	1			1			해양수산	5	5				
의료기술	1			1			보 건	1			1		
간 호	1			1			의료기술	1			1		
환 경	4	0			4		간 호	1			1		
시 설	25	17			8		환 경	4	0			4	
방송통신	3	3					시 설	25	17			8	
행정+세무	3	3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공업	3	3			0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0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0			1		공업+환경	1	0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윤 전	12	3	1		8		윤 전	15	6	1		8	
위 생	1				1		위 생	1	1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1			1		건축운영	2	1			1	
전기운영	3				3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5	1			4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6	6			0		사무운영	6	5			1	
8급 소계	310	120	8	33	76	73	8급 소계	338	118	8	54	80	78
행 정	93	45	1		16	31	행 정	93	43	1		18	31
세 무	10	9			1		세 무	10	9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40	11				29	사회복지	45	11				34
속 기	3		3				속 기	3		3			
전 산	2	1	1				전 산	2	1	1			
공 업	14	2		1	11		공 업	14	2		1	11	
농 업	2	2					농 업	2	2				
녹 지	4				4		녹 지	4				4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보 건	5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 호	13	1		12		0	간 호	33	1		32		0
환 경	1	0			1		환 경	1	0			1	
시 설	28	17			11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1			2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0			4		공업+환경	4	0			4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보건+간호	3			3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방 호	1				1	
윤 전	12	6	1		5		윤 전	14	6	1		7	
위 생	1				1		위 생	1				1	
건축운영	1	1			0		건축운영	1	1			0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1			5		전기운영	6	1			5	
기계운영	7				7		기계운영	7				7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사무운영	4	1	1		2	
9급 소계	221	99	0	11	62	49(12)	9급 소계	244	103	0	13	60	68(12)
행 정	58	30			7	21(12)	행 정	61	32			7	22(12)
세 무	4	4					세 무	5	5				
전 산	1	1					전 산	2	2				
사회복지	44	21		3		20	사회복지	63	22		3		38
공 업	16	3			13		공 업	16	3			13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 건	3			3			보 건	6			6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0			0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환 경	2	0			2		환 경	3	0			3	
시 설	14	10			4		시 설	18	14			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시설	4	2			2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방 호	3				3		방 호	2				2	
운 전	25	9		3	13		운 전	20	6		3	11	
위 생	1	1			0		위 생	0	0			0	
시설관리	2	1			1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0	1			9		기계운영	10	1			9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1	7			1	3	사무운영	10	6			1	3
연구직계	17	2			15		연구직계	17	3			14	
학예연구사	11	1			10		학예연구사	11	2			9	
환경연구사	5				5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계	3	2			1		지도직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농촌지도사	3	2			1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60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역밀착형 생활SOC업무 등 우리시 당면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 신설 및 조정

2. 주요내용

가. '단위별 업무이관'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노인장애인과	○ 부랑인 입퇴소 관리	사 회 복 지 과
도 시 재 생 과	○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기 획 예 산 과

나. 업무신설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문 화 예 술 과	○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자 치 행 정 과	○ 유달회 운영	
사 회 복 지 과	○ 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노인장애인과	○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안 전 총 괄 과	○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 예비군육성지원	
도 시 재 생 과	○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추진	

다. 업무폐지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문 화 예 술 과	○ 예술촌 조성 및 운영 ○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관리 ○ 목포문화재단 운영 ○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 야외놀이마당 유지 관리 ○ 목포를 빛낸 명인선정 및 조형물 설치 ○ 노적봉 예술공원 운영·관리 ○ 공연작품 기획, 제작, 공연에 관한 사항	
자 치 행 정 과	○ 방위협의회 및 유달회 운영 ○ F1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	○ 정신요양시설·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검토 : 해당없음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여성가족과-17924(2019.4.30.) : 2019A전남목포023

9. 입법예고 : 2019. 5. 1. ~ 5. 8.(7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 사문 분장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제5조의 2에 제8호, 제10호부터 제11호, 제13호, 제16호, 제23호, 제27호, 제29호를 삭제하고, 제33호부터 제3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삭제

10. 삭제

11. 삭제

13. 삭제

16. 삭제

23. 삭제

27. 삭제

29. 삭제

33.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37.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38.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39.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2호, 제50호를 삭제하고,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삭제

50. 삭제

115. 유달회 운영

제13조제77호부터 제7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7. 부랑인 입퇴소 관리

78. 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제14조에 제24호, 제34호를 삭제하고,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삭제

34. 삭제

41.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제25조제148호부터 제14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149. 예비군육성지원

제38조제2항 제50호를 삭제하고,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삭제

51.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추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 ---
1. ~ 106. (생 락)	1. ~ 106. (현행과 같음)
<신 설>	107.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제5조의2(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의2(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락)	1. ~ 7 (현행과 같음)
8. 예술촌 조성 및 운영	8. <삭 제>
9. (생 락)	9. (현행과 같음)
10.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관리	10. <삭 제>
11. 목포문화재단 운영	11. <삭 제>
12. (생 락)	12. (현행과 같음)
13.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13. <삭 제>
14. ~ 15. (생 락)	14. ~ 15 (현행과 같음)
16. 야외놀이마당 유지관리	16. <삭 제>
17. ~ 22. (생 락)	17. ~ 22 (현행과 같음)
23. 목포를 빛낸 명인선정 및 조형물 설치	23. <삭 제>
24. ~ 26. (생 락)	24. ~ 26 (현행과 같음)
27. 노적봉 예술공원 운영·관리	27. <삭 제>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29. 공연작품 기획, 제작, 공연에 관한 사항	29. <삭 제>
30. ~ 32. (생 략)	30.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37.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38.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39.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자치행정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위협의회 및 유달회 운영	2. <삭 제>
3. ~ 49. (생 략)	3. ~ 49. (현행과 같음)
50. F1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삭 제>
51. ~ 114. (생 략)	51. ~ 114. (현행과 같음)
<신 설>	115. 유달회 운영
제13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사회복지과) ----- -----.
1. ~ 76. (생 략)	1. ~ 76. (현행과 같음)
<신 설>	77. 부랑인 입퇴소 관리
	78. 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제14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제14조(노인장애인과) -----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생 략)

24. 정신요양시설·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25. ~ 33. (생 략)

34. 부랑인 입퇴소 관리

35. ~ 40. (생 략)

<신 설>

제25조2(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7. (생 략)

<신 설>

제38조 (하부조직) ② 도시재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49. (생 략)

50.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신 설>

-----.

1. ~ 23. (현행과 같음)

24. <삭 제>

25. ~ 33. (현행과 같음)

34. <삭 제>

35. ~ 40. (현행과 같음)

41.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제25조2(안전총괄과) -----
-----.

1. ~ 147. (현행과 같음)

14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 설치·운영

149. 예비군육성지원

제38조 (하부조직) ② -----
-----.

1. ~ 49. (현행과 같음)

<삭 제>

51.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추진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2011.6.2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단·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